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3 선고 2019가단32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서울 서초구 C 대 18,374.3m² 중 42,602분의 3.1829 지분에 관하여,
나. 서울 서초구 D 대 23,051.1m² 중 42,602분의 3.351 지분에 관하여,
다. 서울 서초구 E 대 1,175.6m² 중 42,602분의 3.351 지분에 관하여
각 2015. 3. 24. 서울 서초구 C외 3필지 상가 1층 F호 37.50m²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진영

별지